

금속창호 · 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업무내용

금속구조물 · 창호 · 온실공사

1. 창호공사: 각종 금속재 · 합성수지 · 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2. 금속구조물공사
 - ①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 · 벽체 · 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
 - ②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도로, 교량, 터널 및 그 밖의 장소에 안전 · 경계 · 방호 · 방음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 ③ 각종 금속류로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3. 온실설치공사: 농업 · 임업 · 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

지붕판금 · 건축물조립공사

1. 지붕 · 판금공사: 기와 · 슬레이트 · 금속판 · 아스팔트 싱글(asphalt shingle)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2. 건축물조립공사: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 · 외벽 · 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 등록기준

2025.10.01 개정 기준

1. 자본금

법인	개인
1.5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2. 기술능력

금속구조물 · 창호 · 온실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 토목 ·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지붕판금 · 건축물조립공사	

기술사	기계, 금형, 용접, 금속재료,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건축구조, 건축시공, 시설원예
기능장	기계가공, 금형제작,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전기,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기사	일반기계,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용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금속재료, 전기, 전기공사, 토목, 콘크리트, 건축, 시설원예
산업기사	기중기, 기계조립,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설계,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판금제관, 용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금속재료, 전기, 전기공사, 토목, 콘크리트, 건축,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방수, 비계, 온수온돌, 유리시공, 건축제도, 창호제작(금속재), 목재창호
기능사	기중기운전, 기계가공조립, 컴퓨터응용선반, 컴퓨터응용밀링, 연삭, 전산응용기계제도, 금형, 판금제관,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금속재료시험, 전기, 콘크리트,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축목공, 방수, 비계,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금속도장
기능사보	선반, 밀링, 연삭, 프레스금형, 다듬질,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콘크리트, 건축목공, 방수, 비계, 조적, 온수온돌, 구들온돌, 유리시공, 금속재창호, 목재창호, 금속도장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

3. 공제조합

2026.07.27 기준

업종	1좌당	자본금	CC등급 이상	C등급
금속창호 · 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958,438원	1.5억원	42좌 (40,254,396원)	53좌 (50,797,214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동일				

4. 시설 · 장비

사무실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시 · 도 안에 있어야 한다.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건물 등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등록 불가

신규등록 소요기간

평균 30~45일 이내 소요